북한이탈주민학생지원규정 5-2-15

규정번호 5-2-15
제정일자 2019.10.21
최근개정
개정차수
관리부서 학생복지팀

제1조(목적) 이 운영지침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학생의 수업 참석 및 진로상담 등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북한이탈주민학생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북한이탈주민법) 제2조의 제1호에서 정하는 교육보호대상자를 말한다.

제3조(차별금지) 북한이탈주민학생은 학생권, 학습권, 생활복지권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, 대학구성원 모두는 북한이탈주민학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대학의 지원) ① 북한이탈주민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학생지원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업무
2. 북한이탈주민학생의 학사 및 진로, 취업상담에 관한 업무
3. 북한이탈주민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업무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② 학생지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학생의 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한다.

제5조(장학금 지급) 북한이탈주민학생에게는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일정 성적기준을 충족(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백분위 2회 연속 70점 미만자 제외)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조(프로그램 운영) 일반 학생들의 북한이탈주민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이탈주민학생에 대한 차별예방을 위해 특강 및 이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기타) 북한이탈주민학생에 관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